대한수의사회 「수의사연수교육규정」 개정 안내

대한수의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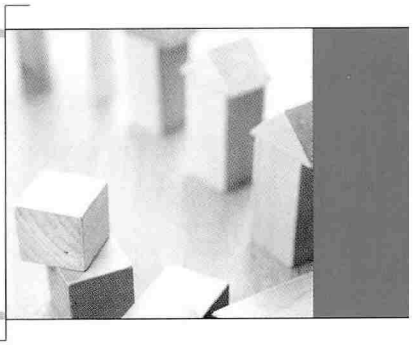

1. 개정 사유

- 현행 「수의사 연수교육 규정」 제7조에 당해연도 신규개업자나 폐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개설 또는 종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 마다 과태료처분 적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교육 후 보고양식 등 제반 규정에 대하여 수정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7조와 관련 당해연도 상반기에 개업하고 하반기에 폐업하는 경우나, 하반기에 개업하고 차기년도 상반기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연수교육을 면제하는 것으로 정함
- 제7조의2와 관련 2개소 이상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 종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수의사회의 필수교육을 각각 5시간이상씩 이수하는 것으로 정함
- 제9조의2를 신설하여 1월 말까지 각 시도지부의 당해연도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제12조와 관련 별표1로 이수자 명단의 보고양식을 정함

3.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의2 〈신설〉	제6조의2(온라인교육) 제6조의 교육기관 중 대한수의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제7조(교육시간) ①교육의 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하고, 당해연도 신규개업자 및 폐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7조의2에 의한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신설〉	제7조(교육시간)① _____ 신규개업자 · 신규종사수의사(이하 '신규개업자'라 한다.) _____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다만, 당해연도 상반기에 신규개업하고 하반기에 폐업하는 경우와 당해연도 하반기에 신규개업하고 차기연도 상반기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교육은 면제한다.
제7조의2(필수교육) 제3조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개업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필수교육) 제3조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개업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개소 이상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수의사회의 교육을 각각 5시간이상씩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설〉	제9조의2(교육계획의 보고) 각 시 · 도지부는 당해연도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완료 후 30일 이내에 본회에 이수자 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완료 후 30일 이내에 본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이수자 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신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보고 양식

연번	성명	면허 번호	병원명	주소	전화 번호	관할 지부	교육 기관	이수 시간	교육 장소	교육 일자	교육 내용